

법령에 기초하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이 실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 서비스는, 시민의 여러분(여기저기)에게서 지불해 받고 있는 세금, 보험료, 사용료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은 납부기한까지 지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지불이 응해 주실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체납을 방치해 두는 것은, 납부 의식의 가일층 희박화에 연결될뿐만인가, 정확히 납부해 받고 있는 분과의 공평성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또 미수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의 재정을 압박해 주민 서비스의 정지 등,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도 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삼의 납부 최고에 대하여 반응이 없는,또는 납부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납부가 따라 주실 수 없을 경우, 세금, 보험료, 사용료등을 체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법령에 기초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란

세금이나 각종보험료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관계 없이, 체납이 되고 있는 세금등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제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해 가치를 환원하고, 체납하고 있는 세금등으로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 징수 수속을 말합니다.

체납처분 등이 떠나려 가라

체납처분 등의 수속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가 됩니다.

납부기한→독촉→최고→재산조사·수색→재산압류→환가 처분→체납 시세등에 충당

납부기한을 지나면 체납이 됩니다

정해진 납부해야 할 기한(납부기한)까지 바치지 않는 것을 「체납」라고 말합니다.

체납이 되면 시에서 독촉이나 최고에 의해 납부를 촉구되게 됩니다.

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는, 체납하는 액세가 완납할 때까지의 사이, 체납금이 가산되기 때문, 납부가 늦어질 만큼 체납금은 증가합니다.

또한, 체납금도 법령등에 의해 납부를 의무화할 수 있고 있어, 체납금만이 미납의 경우라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 기초하는 독촉장의 송부

납부기한을 지나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0 일 이내에 독촉장이 송부됩니다. 독촉장은 단지 납부를 최고하는 것 뿐의 물건이 아니고, 법령에 정해진 체납처분의 전제수속이 되고, 납부기한을 지나도 납부가 없으면, 독촉은 법률에 기초해서 반드시 송부됩니다.

지방세법에는, 독촉장을 발한 날부터 셈을 시작해서 10 일을 경과한 날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차압 없으면 안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독촉장을 받았을 경우는 신속하게 납부해 주세요.

또한, 납부기한을 지나고 나서 납부되었을 경우, 잇갈림으로 독촉장이 앞으로 도착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전화나 문서등에 의한 최고

독촉장이 송부되어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전화나 문서최고 또는 방문에 의해 자주적으로 납부해 받도록 납부의 최선을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조사 및 수색

독촉이나 납부의 최선을 실시해도 납부가 따라 주실 수 없을 경우는, 관공서, 금융기관, 근무처, 거래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재산은 급여, 예축금, 부동산, 동산, 자동차, 외상판매금 등 모든 재산이 됩니다).

또, 재산의 발견, 압류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체납자나 그 관계자의 주거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 없게 강제적으로 수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산조사나 수색은, 국세징수법 제 141 조 및 제 142 조에서 147 조의 규정에 기초하고, 체납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얻지 않고 행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압류

재산조사에 의해 제압하는 재산을 결정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제압합니다. 압류를

실시했을 경우, 재산에 따라서는 체납자본인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이해관계인 (근무처, 금융기관, 부동산의 저당권자 등)에, 「압류통지서」가 송부됩니다.

부동산의 압류가 실시되면 ...

부동산의 등기부위로 「압류」라고 기재됩니다.

저당권자 등, 등기부상의 권리자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고, 부동산을 제압한 것을 통지합니다.

압류부동산은, 법률상의 처분(매매, 증여)이나, 사실상의 처분(훼손, 파기)을 금지됩니다.

만일 압류후에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한들, 시는 압류등기가 우선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전의 체납자의 재산으로서 환가 공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압류후도 납부가 없을 경우는, 시가 매각(공매)해 체납 시세등에 충당할 것이 있습니다.

급여, 예축금의 압류가 실시되면 ...

급여의 경우는 근무처에, 예축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압류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급여의 압류는, 체납 시세가 완납에 이르기까지, 매월의 급여 등으로부터 일정액수가 빼집니다.

제압한 예축금이나 급여는 발탁후, 체납 시세에 충당됩니다.

기타의 압류 대상재산은 ...

급여나 예축금, 부동산의 이외에도, 생명보험계약이나 자동차, 유가 증권, 집세수입, 외상판매금, 동산(전자제품, 보석 등의 귀금속, 골동품, 회화등)등, 금전적 가치가 있어

환가 처분에 의해 세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체납처분에 관한 Q&A

질문 1 납세자본인의 동의 없는 재산의 압류는, 위법이지 않습니까?

회답 1 법률에서는, 「독촉장을 발한 날부터 셈을 시작해서 10 일을 경과한 날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재산을 차압 없으면 안된다」 (지방세법 제 331 조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것부터, 압류는, 사전연락이나 납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당한 행정 처분이 됩니다.

질문 2 납세자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금융기관등에 재산조사를 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지 않습니까?

회답 2 세금 등을 체납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기초해 모든 재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법령에 기초하는 조사 때문에, 근무처나 금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은, 집행 기관인 자치단체의 조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의 것부터, 이 재산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재산조사가 됩니다.

질문 3 시청의 직원은, 세무서직원과 같은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회답 3 시청에서 징세 사무를 실시하는 직원은, 지방세법의 규정이 의해, 세의 부과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및 조사 또는 체납금의 징수 등에 대해서 시장의

직무권한을 위임된 징세 관리가 됩니다. 징세 관리의 직무가 되는 체납처분의 수속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을 비롯한 공조공과(세금)의 징수에 관한 법령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게 되고, 세무서직원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기초하는 체납처분을 자기의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곤란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분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재해, 병이나 실업, 사업의 휴식폐업에 의해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등, 일시적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곤란이 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분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그대로 하지 않고, 담당과에 반드시 상담해 주세요.